

 환경부 <small>내일을 위한 정부혁신</small> 보다나은 정부	보 도 참 고 자 료		
	보도일시	배포 후 즉시 보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이채은 과장 / 강승희 사무관 044-201-7340 / 7352
	배포일시	2019. 1. 28. / 총 8매	

1+1 재포장, 소형휴대용 전자제품류 과대포장 원천 퇴출

- ◇ 제품의 과대 포장을 방지하기 위한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1월 29일 개정·공포,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
 - ◇ 제품 판촉을 위한 1+1, 묶음 상품 등 불필요한 비닐 재포장 퇴출, 소형·휴대용 전자제품류에 대한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적용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제품의 과대포장을 방지하기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에 속한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1월 29일 개정·공포한다.
- 이번 개정은 그간 불필요하고 과도한 제품 포장이 지속하는 등 포장폐기물 발생이 급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월 14일 마련된 과대포장 방지대책에 따라 추진된 것이다.
 - 한편, 지난해 12월 24일 개정·공포된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에서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준수 대상 제품으로 차량용 충전기, 근거리 무선통신(블루투스) 스피커 등 300g 이하의 휴대용 전자제품류를 추가한 바 있다.
-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은 첫째, 앞으로 대규모 점포 또는 면적이 33㎡ 이상인 매장이거나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포장되어 생산된 제품을 다시 포장하여 제조·수입·판매하지 못한다.

- 이에 따라 그간 제품 관측을 위한 1+1, 묶음 등의 불필요한 재포장 사례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p>묶음 포장 사례</p>	<p>증정상품 재포장 사례</p>	<p>재포장 개선 사례(가격할인)</p>

□ 둘째, 소형·휴대용 전자제품류에 대한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처음 마련했다.

- 차량용 충전기, 케이블, 이어폰·헤드셋, 마우스, 근거리무선통신(블루투스) 스피커 등 5종의 전자제품 중 300g 이하의 휴대형 제품은 포장공간비율 35% 이하, 포장횟수 2차 이내의 포장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 그동안 과대포장 우려가 있는 제품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 포장공간비율 35% 기준을 초과하는 소형 전자제품류가 차지하는 비율이 62.6%로 나타남에 따라 이들 제품류에 대한 관리 필요성에 따라 취해진 조치인 것이다.

* 시판되고 있는 전자제품류 조사 사례(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18)

	
<p>마우스(포장공간비율 64.5%)</p>	<p>마우스(포장공간비율 23.1%)</p>



차량용충전기(포장공간비율 83.3%)



차량용충전기(포장공간비율 19.9%)

- 그밖에 단위제품 기준은 적용되나 종합제품 기준은 적용되지 않았던 완구·문구·의약외품류·의류 등도 종합제품 기준 적용대상에 포함하여 '종합제품' 제조·판매 시, 과도하게 포장하는 행위를 방지한다. '종합제품'이란 최소 판매단위 2개 이상의 제품을 포장한 것으로, 이번 개선으로 새로이 추가된 제품 등은 포장공간비율 25% 이하,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 이번 개정내용은 7월 1일 이후 제조 또는 수입되는 제품부터 적용되며, 환경부는 개정내용 적용시기에 맞추어 제품의 재포장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재포장이 불가피한 예외 기준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제품포장과 관련한 법령 개정은 관련 업계와 밀접히 연관되는 만큼 제조, 판매업체에서도 과대포장을 줄이고 친환경 제품 포장을 위해 함께 노력해달라”라면서, “이번 제도 개선은 포장폐기물 감량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불필요한 폐기물 감량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제품의 종류별 포장 방법에 대한 기준.
 2. 전자제품류 과대포장 조사사례.
 3. 전문용어 설명.
 4. 질의응답. 끝.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강승희 사무관(☎ 044-201-735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제품의 종류별 포장 방법에 대한 기준

제품의 종류			기준	
			포장공간비율	포장횟수
단위제품	음식료품류	가공식품	15% 이하	2차 이내
		음료	10% 이하	2차 이내
		주류	10% 이하	2차 이내
		제과류	20% 이하 (테커레이션 케이크는 35% 이하)	2차 이내
		건강기능식품	15% 이하	2차 이내
	화장품류	인체 및 두발 세정용 제품류	15% 이하	2차 이내
		그 밖의 화장품류 (방향제를 포함한다)	10% 이하 (향수 제외)	2차 이내
	세제류	세제류	15% 이하	2차 이내
	잡화류	완구·인형류	35% 이하	2차 이내
		문구류	30% 이하	2차 이내
		신변잡화류(지갑 및 허리띠만 해당한다)	30% 이하	2차 이내
	의약외품류	의약외품류	20% 이하	2차 이내
	의류	와이셔츠류·내의류	10% 이하	1차 이내
	전자제품류	차량용 충전기, 케이블, 이어폰· 헤드셋, 마우스, 근거리무선통신 (블루투스) 스피커 (300그램 이하의 휴대용 제품에 한정한다)	35% 이하	2차 이내
종합제품	1차식품,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류, 세제류, 완구·인형류, 문구류, 신변잡화류, 의약외품류, 와이셔츠류, 내의류	25% 이하	2차 이내	

붙임 2

전자제품류 과대포장 조사사례

-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전자제품류 83개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 52개는 전자제품류에 대한 포장공간비율 기준안인 35%를 초과하였고, 31종은 포장공간비율이 35% 이내로 나타남
 - * (35% 초과비율) 충전기 81.8%, 케이블 46.1%, 이어폰·헤드셋 33.3%, 마우스 42.8%, 블루투스 스피커 50%

○ 조사 사례

- 충전기



포장공간비율 81.1%



포장공간비율 50.6%

- 케이블



포장공간비율 74.8%



포장공간비율 85.4%

- 이어폰/헤드셋



포장공간비율 56.4%



포장공간비율 49.4%

- 마우스



포장공간비율 64.5%



포장공간비율 54.5%

- 블루투스 스피커



포장공간비율 76.1%



포장공간비율 41.9%

□ **포장공간비율** : 전체 포장용적(부피)에서 제품체적(부피) 및 필요공간용적(부피)를 제외한 공간이 차지하는 비율

$$\text{포장공간비율 (\%)} = \frac{\text{포장용적} - (\text{제품체적} + \text{필요공간용적})}{\text{포장용적}}$$

<상품의 제품체적 및 필요공간용적 예시>

	윗면	측면	부피
제품체적			$a \times b \times h$
필요공간용적			색칠된 부분

※ 예를 들어 포장공간비율이 25% 이내로 제한된 상자 포장형 선물세트는 포장상자 내 제품이 75% 이상이어야 함을 의미

□ **단위제품** : 1회 이상 포장한 최소 판매단위의 제품

□ **종합제품** : 같은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최소 판매단위의 제품을 2개 이상 함께 포장한 제품

1. 제품의 과대포장 기준 변경 시, 기준 변경 전 제품의 회수·폐기 등 불필요한 비용과 자원의 낭비가 발생하는 것 아닌가?

- 과대포장 기준 변경 이후 제조·수입되는 제품부터 변경된 기준을 적용하게 되며,
 - 기존 제조·수입된 제품을 회수·폐기할 필요는 없음

2. 재포장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에 따른 1·2차 포장, 종합제품으로 바코드가 표시된, 통상적 판매가 명확한 것은 재포장이 아니며,
 - 1·2차 포장, 종합제품으로 바코드가 없거나 통상적 판매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재포장으로 간주함
 - 예를 들어 맥주 6개, 12개, 24개 등의 상자 포장의 경우 바코드가 있으며 통상적 판매에 해당되므로 재포장이 아니며, 판촉용 묶음 포장으로 바코드가 없으며 상황에 따라 판매단위가 변경되는 경우 재포장에 해당됨

2. 과대포장 방지대책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 “과대포장 방지를 위한 실태조사 및 적정기준 마련 연구(“18.7월~)”, 관련 업계·소비자단체·전문가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18.9.5.~12.11., 약 150여 명)을 통해,
 - 포장규제 강화가 필요한 제품군을 선정하고, 포장폐기물 감량을 위한 과대포장 방지대책을 검토하였음